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80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6월 17일
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고 조례의 적용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국한되므로, 민관 협의체 구성원에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, 이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민관 협의체 구성원에 중앙행정기관을 삭제함(안 제7조제4항)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4항 중 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하도록 노력하고,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”를 “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7조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) ①~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,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7조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) ①~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) ①~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) ①~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</u>